

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) [개정 2020.12.31.]

비위의 유형	금품 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		100만원 미만 수동	100만원 이상 능동	100만원 이상
	100만원 미만 수동	100만원 이상 능동			
1. 위법 · 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	강등-감봉	해임-정직	파면-강등		
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 ·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해임-정직	파면-강등	파면-해임		
3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 ·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파면-강등	파면-해임	파면		

※ 비고

- "금품 · 향응 등 재산상 이익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"직무관련자"와 "직무관련공무원"이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.

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

(※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_시행일 2020.9.4.)

비 위 유 형	수 수 행 위	금 액		100만원 미만 수동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능동	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강등 · 해임 · 파면	500만원 이상 해임 · 파면
		100만원 미만 수동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능동				
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	수 동	감봉 · 정직 · 강등	강등 · 해임 · 파면	수동	정직 · 강등 · 해임	해임 · 파면	파면
	능 동	정직 · 강등 · 해임	해임 · 파면				
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, 위법 ·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수 동	정직 · 강등 · 해임	해임 · 파면	수동	강등 · 해임 · 파면	파면	파면
	능 동	강등 · 해임 · 파면					
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, 위법 ·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수 동	강등 · 해임 · 파면		수동	해임 · 파면	파면	파면
	능 동	해임 · 파면					